#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76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이종배·서지영·김소희

이종욱 • 김용태 • 김재섭

이만희 · 김위상 · 권영진

김성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에 머무는 등 기존의 정책적 노력은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재정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 및 저출생·고령화인

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 및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한다.

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부는 예산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에는 저출생·고령화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7조의3(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한다.
  - ②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저출생·고령화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3"을 "제68조의3, 제68조의4"로 한다.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8조의4(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저출생·고령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저출생·고령화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3.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하고,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3조의4(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 가하는 보고서(이하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②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저출생·고령화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 및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 생·고령화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제6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제출 및 제7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	③
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73조의4</u> 에 따른 중장기 기	2. <u>제73조의5</u>
금재정관리계획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① (생 략)	④ ~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	제16조(예산의 원칙)
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정부는 예산이 저출생 및 인
	구의 고령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제27조의2(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
	산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9의2. (생 략) <신 설>

10. ~ 16. (생략) <신 설>

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저출생・고령화 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 에는 저출생・고령화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 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 서

10. ~ 16.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 산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 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 하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 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 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 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u> </u>
②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
에는 집행실적, 저출생·고령화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 제68조의4
제68조의4(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
<u>부는 기금이 저출생·고령화에</u>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
서(이하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②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있다.

1. ~ 6의2. (생 략) <u><신 설></u>

7. (생 략) <신 설>

-	용계획서에는 저출생・고령호	<u></u>
<u>-</u>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	子
2	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여	<u>;</u>
-	<u>한다.</u>	
(	③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은	<u> </u>
-	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최	<u>                                     </u>
-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2	<u>성</u>
-	<u>한다.</u>	
제'	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경	싅
•	부서류)	-
-		-
-		-
-		_
-		_
-		_
-		_
-		_
-		_
-		-
-		-
-	<u>.</u>	
-	1. ~ 6의2. (현행과 같음)	
(	6의3.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급	<u>그</u>
	<u> 운용계획서</u>	
,	7. (현행과 같음)	
제	73조의4(저출생·고령화인기	<u>{</u>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 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이하 "저출생·고령화인지 기 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②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 산서에는 집행실적, 저출생·고 령화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u>제73조의4</u>(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 (생 략) 제73조의5(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 (현행 제73조의4와 같 음)